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분할납부(안 제18조)

- 1) 법 위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 종료일(안 제20조)

- 1) 법 제29조에서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을 종료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동일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다. 서식 개정

- 1) 청년 연령변경, 유예횟수 제한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정지”를 “정지 또는 감액”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은행법」”을 “영 제16조제4항 각 호”로, “은행 또는”을 “기관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으로 한다.

④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2) 중 “18세 이상 34세”를 “15세 이상 34세(병역의무 이행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중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취업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 제4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개월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②동의자 (신청인의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가구원 포함· 제외사유(필요시)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③[]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15~6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또는 15~34세(병역의무 이행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65~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8~34세 중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여부 1선택[] 2선택[] 해당없음 []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쪽 작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④[]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요건심사형: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15~34세(병역의무 이행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서식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이면서 아 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18~34세는 고시금액) 이하
	선발형(청년): 15~34세(병역의무 이행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 중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고시금액 이하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자격 인정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 인정 [] 불인정		수급자격 인정 유형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소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

2. 개인정보(DB)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 정보통신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30년

5.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조사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하여 등록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공, 불이익 안내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1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2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3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4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5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유족), 취업지원대상자,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출입국정보,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그 밖에 가구원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취업경험요건 확인 등에 관한 자료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그 취업지원 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1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2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3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4 성명	(서명 또는 인)
가구원5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공모한 사람도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선발형)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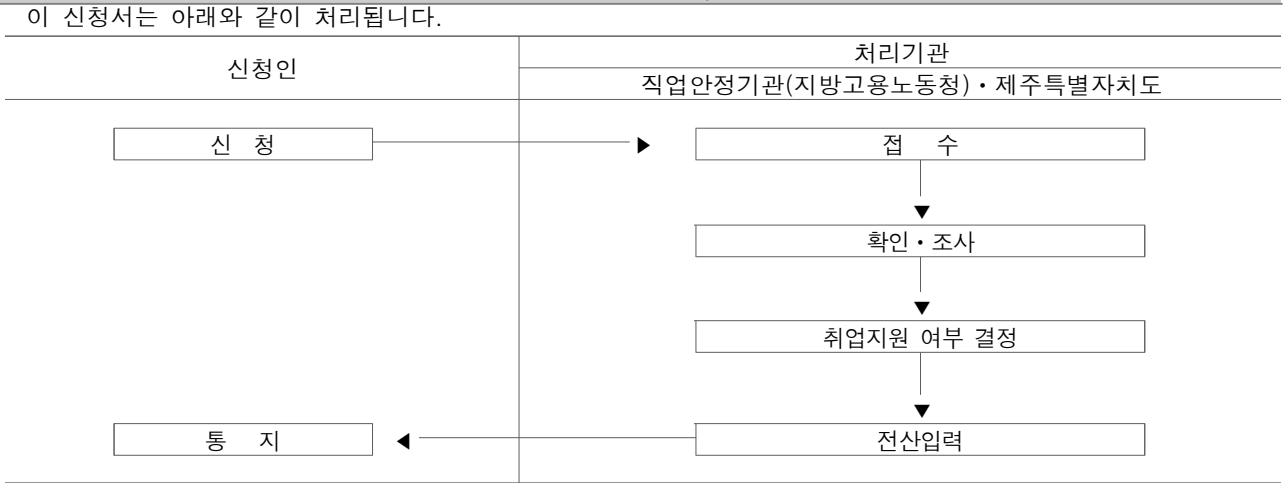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 및 ②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②란에 적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은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2. ③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 표시합니다.
③란의 ‘취업취약계층’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아래 각 분류의 세부 요건은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 등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여성가구주
⑥ 결혼이민자	⑦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⑧ 신용회복지원자	⑨ 위기청소년 등	⑩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⑪ 건설일용직 근로자	⑫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⑬ 취업맞춤특기병	⑭ 미혼모(부)·한부모	⑮ 청소년부모
⑯ 구직단념청년	⑰ 청년	⑱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⑲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	⑳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의 실직자
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 이직자	㉒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㉓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㉔ 영세 자영업자	㉕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지원 추천을 받은 자
㉖ 노무제공자 등	㉗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3. ④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 표시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소		
유예 신청 결과	☐ 승인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님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가 아님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가 아님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님 ☐ 유예 가능한 기간(2년)을 초과함
		(구체적 사유)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에 종료됩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수급자	성명
	주소
반환명령 내용 (추가 징수 포함)	반환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① 반환명령 금액 원
	② 추가 징수 금액 원
	③ 납부할 금액(①+②) 원
	④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 2회 분할 납부 [] 3회 분할납부
	④ 납부기한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를 합니다.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관서(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 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에 관한 통지) ----- ----- ----- -----.
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구직 촉진수당의 지급 <u>정지</u>	1. ----- ----- <u>정지 또는 감</u> <u>액</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 법 등) ①·② (생 략)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 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 리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u>은행 또는 「우체국예금·</u> <u>보험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체 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 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 체할 수 있다.	③ ----- ----- ----- <u>영 제16조제4항</u> <u>각 호</u> ----- --- <u>기관 또는</u> ----- ----- ----- -----.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② (생 략)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	③ ----- -----

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 <단서 삭제>

④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 3. (생략) 4. <u>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난 경우: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난 날</u> 5. ~ 8. (생략) ③·④ (생략)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